



<p><u>실적이 3 개월이상 있거나 하나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결제계좌가 외환은행인 경우 연 0.1%</u></p> <p>2. 이 예금 가입후 12 개월이내에 본인명의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고 결제계좌가 외환은행인 경우 연 0.1%</u></p> <p>3. 매월 5 만원이상으로 24 회차 이상 자동이체한 경우 연 0.1%</p> <p>② 제 1 항의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(제정)</p> <p>이 특약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(1)</p> <p>이 특약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(경과조치) 이 특약의 변경시행일 이전에 이 예금에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3조 제1항의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최대 0.3%까지 제11조의 고시이율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.</p> <p><u>1.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이내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</u> 연 0.1%</p> <p><u>2.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전월부터 과거 3개월이내 본인명의 외환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연 0.1%</u></p> <p>3. 매월 10만원이상으로 24회차 이상 자동이체한 경우 연 0.1%</p>	<p><u>1.이 예금 가입후 12 개월이내에 급여이체 실적(월 건당 50 만원이상) 3 개월이상 있거나 하나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결제계좌가 KEB 하나은행인 경우 연 0.1%</u></p> <p>2. 이 예금 가입후 12 개월이내에 본인명의 <u>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고 결제계좌가 KEB 하나은행인 경우 연 0.1%</u></p> <p>3. 매월 5 만원이상으로 24 회차 이상 자동이체한 경우 연 0.1%</p> <p>② 제 1 항의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(제정)</p> <p>이 특약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(1)</p> <p>이 특약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(경과조치) 이 특약의 변경시행일 이전에 이 예금에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3조 제1항의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최대 0.3%까지 제11조의 고시이율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.</p> <p><u>1.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이내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(월 건당 50만원 이상)</u> 연 0.1%</p> <p><u>2.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전월부터 과거 3개월이내 본인명의 하나신용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연 0.1%</u></p> <p>3. 매월 10만원이상으로 24회차 이상 자동이체한 경우 연 0.1%</p>	<p>급여인정액 명확화, 행명 변경</p> <p>카드사용실적 -&gt; 결제실적</p> <p>급여인정액 명확화,</p> <p>카드사용실적 -&gt; 결제실적</p>
--	--	---

## 「KEB하나 재형저축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### 제 1 조 적용범위

이 특약은 고객과 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고 한다) 과의 「KEB 하나 재형저축(구 외환은행)」(이하 "이 예금"이라고 한다)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 제 2 조 예금 과목

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
2. 1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00 만원 이하인 고객

### 제 4 조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

① 이 예금은 분기 3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. 단,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.

② 은행은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저축 가입 가능 한도를 조회·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5 조 계약기간

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 년으로 합니다.

② 만기일 1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1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6 조 세율의 적용

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1. 이 약관 제 3 조 각 호의 가입자격, 제 4 조 제 1 항의 분기 가입한도, 제 5 조의 계약기간, 제 8 조 제 1 항의 가입자격 확인서류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2.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### 제 7 조 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

① 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1.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

가.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 천 500 만원 이하인 고객

나. 제 3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천 600 만원 이하인 고객

다. 제 3 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.)에 근무하고 있으며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 세 이상 29 세 이하인 고객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 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.)

2. 제 3 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 1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 년이 되는 날

② 위 1 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의 사망,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 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1. 천재·지변

2. 저축자의 퇴직

3. 사업장의 폐업

4. 저축자의 3 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

5.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### 제 8 조 가입자격의 검증

① 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「소득확인증명서」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② 이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「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」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③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제출한 「소득확인증명서」 및 「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」에 기재된 내용이 제 3 조 및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처리합니다.

④ 제 3 항의 은행의 가입자격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객이 제 3 조 및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고객이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 은행에 통지합니다.

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은행에 그 사실이 통지된 경우 그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됩니다.

⑥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,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 12 조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### 제 9 조 가입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

① 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가입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단문자(또는 전자우편)의 방법으로 알립니다.

② 고객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은행이 통보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.

③ 위 2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,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④ 국세청은 위 2 항과 3 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은행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,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은행은 제 8 조 제 5 항에 의거하여 중단된 입금이 다시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합니다.

### 제 10 조 제한사항

① 이 예금은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② 이 예금은 계좌분할 및 일부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③ 이 예금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.

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제한특례법 및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.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광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

### 제 11 조 이자율의 적용

- ① 신규가입 당일 및 이율 변경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해지 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
- ② 이율변경일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과 7 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. 다만, 이율 변경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며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로 합니다.

### 제 12 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

신규가입 당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적용하여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.

### 제 13 조 우대이율

- ① 이 예금 가입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항목 우대 이율을 최대 연 0.3%까지 제 11 조의 고시이율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.
  1. 이 예금 가입후 12 개월이내에 급여이체 실적(월 건당 50 만원이상) 3 개월이상 있거나 하나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결제계좌가 KEB 하나은행인 경우 연 0.1%
  2. 이 예금 가입후 12 개월이내에 본인명의 하나카드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고 결제계좌가 KEB 하나은행인 경우 연 0.1%
  3. 매월 5 만원이상으로 24 회차 이상 자동이체한 경우 연 0.1%
- ② 제 1 항의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
부칙 (제정)

이 특약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)

이 특약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특약의 변경시행일 이전에 이 예금에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3조 제1항의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최대 0.3%까지 제11조의 고시이율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.

1.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이내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(월 건당 50만원이상) 연 0.1%
2.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전월부터 과거 3개월이내 본인명의 하나신용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연 0.1%
3. 매월 10만원이상으로 24회차 이상 자동이체한 경우 연 0.1%

부칙 (2)

이 변경 특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.

다만,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년 3월 30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.

부칙(3)

이 특약은 2015년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칙(4)

이 특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칙(5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